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

조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에 대체영업시설인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영업권이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지 내 상가 등의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순환형 개발을 대체 영업을 가능한 가설점포가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토지에

가설점포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순환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○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건축 조례 상 ‘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’의 용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 공사 중에도 세입자 등 영업권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